

특별상 수상 규정

제1조(목적) 전력전자학회 특별상(이하 “상” 이라고 함)은 전력전자 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증자) 특별상 기금의 기증자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1.(회원) 전력전자 및 관련 분야의 학문 또는 기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기증금을 납입한 자.
- 2.(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특별회원사중에서 기증금을 납입한 특별 회원사.
- 3.(일반) 기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기증금을 납입한 개인 또는 법인.

제3조(기증금) 특별상을 위한 기증자별 기증금의 하한액은 아래의 표를 따른다.

기증자	하한 금액	비 고
회 원	2,000만원	제2조 1항 해당자
특별회원	1억원	제2조 2항 해당자
일 반	2억원	제2조 3항 해당자

제4조(상금의 기준) 특별상은 원칙적으로 명예이나 기증자가 기증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상의 종류와 명칭) 상의 종류는 학술상, 기술상, 논문상, 공로상으로 나누며 명칭은 기증자의 명칭 또는 아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증금의 운용) 기증금은 특별회계로 처리하되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회원이 기증한 기증금은 법정이자자 확정된 유가증권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원 및 일반이 기증한 기증금 중 일부는 특별상 수여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학회 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상훈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8조(상의 수여)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나 학술대회 등에서 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